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1. 1.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관련 재난 심각 단계에서 국가보상체계에 따라 예방접종 이상반응 학생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예방접종 이후 필요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에 ‘제1급 감염병 예방접종 관련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안 별표 1 제4호 나목, 재해대책사업수요 교부대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협의 예정

라. 기 타 : 해당 없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별표 1]의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제4조의2 관련)

4. 법 제5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재해대책사업수요)	가. 교부기준 태풍·홍수·폭설·지진·가뭄 또는 감염병 등 각종 재해(이하 “각종재해”라 한다)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교부대상 1) 각종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복구사업 2) 각종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등의 피해 예방사업 3) 각종재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송, 임시수용 사업 4) 각종재해로 인한 교육 일정 연기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 교육 등의 사업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심각단계에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	--

	‘중대본’)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생에 대해 제1급 감염병 예방접종 이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는 경우는 제외) 6) 중대본이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각종재해와 관련하여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각종재해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교부방법 시·도교육감이 재정지원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한다.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